##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23. 11. 30.(목)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4. 불참위원 : 없음

#### 5. 회의내용

#### ① 서면회의 사유

o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서면결의) 및 제14조의2(서면보고)에 의거, 의결사항 '가', '다'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되며, '나', '라', '마', '바', '사', '아', 보고사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일상적 반복적 안전에 해당됨

#### 2 의결사항

- 기: 「방송법」, 「방송문화진홍회법」, 「한국교육방송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한 건 (2023-45(서)-204)
  - o「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방송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원안 대로 심의·의결함
- 나. 재허가조건 및 시정명령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2023-45(서)-205~207)
- o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는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22년 UHD콘텐츠 투자금액중 미이행금액 5,432백만원을 2024년말까지 집행하여 재허가 조건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오비에스경인티브이㈜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옥 인천이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2024년 4월말까지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한다(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옥 인천이전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
- o 재허가조건 위반 관련 시정명령('21.12.30.)을 이행하지 않은 ㈜문화방송에 대하여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다. 재숭인 조건 위반 중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제이티 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 2023-45(서)-208~210)

- o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는 2020년 재승인 조건 2번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도의 객관성·공 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 o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2023년도 재승인 조건 5번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23.11.27)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 o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2020년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22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 15.021백만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는 것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화

#### 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고시에 관한 건(2023-45(서)-211)

o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 17개기관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24.1.1.~'24.12.31.)하기로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마.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3-45(서)-212)

o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바. 「방송법」제100조제2항 출연자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2023-45(서)-213~216)

o「방송법」제100조 제2항의 출연자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에 대하여「방송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방송사(채널)	위반 프로그램(방송일)	법정제재	출연자	방송법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21.8.27)	주의처분('22.6.22.)	· 김어준	「방송법」 제100조 제2항의 출연자 조치 의무 미이행	1,000만 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21.12.8.)	주의처분('22.2.14.)			1,000만 원
	김어준의 뉴스공장(('20.5.26.)	주의처분'20.10.12.)			1,000만 원
	김어준의 뉴스공장(('20.12.25.)	주의처분('21.11.16.)			1,000만 원

#### 사.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45(서)-217~223)

- o 주식회사 미디어로그, 남인천방송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비씨플러스,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아이비스포츠의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위반한 주식회사 미디어로그에 3,750만 원, 남인천 방송 주식회사에 750만 원, 주식회사 엠비씨플러스에 500만 원 각각 부과
- 자막광고 방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500만 원 부과
- 간접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에 500만 원 부과
-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에 500만 원 부과
- 간접광고 시간을 위반한 주식회사 아이비스포츠에 1,500만 원 부과

### 아.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45(서)-224~227)

o 주식회사 아이비스포츠, 주식회사 더스카이케이, 주식회사 볼링플러스, 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의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에 대하여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③ 보고사항

####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 나.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 관련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o 외국인이 지상파방송사(SBS, KNN, TBC)의 주식을 소유하여 발생한「방송법」제14조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및 재발방지 방안을 원안대로 접수한

#### 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사업계획 심사에 관한 사항

o 경기도(화성)와 충청남도(예산)가 신청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계획서에 관한 심사 계획을 원안대로 접수함

#### 라.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o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실천규범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원안대로 접수함

#### 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불법촬영물 등 대리 신고·삭제요청기관 지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 바. OTT 음워서비스 가입 해지 관련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OTT·음원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보다 해지가 어렵고 결제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용 빈도가 높은 동영상·음원 서비스 점검을 통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 사. 2022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2022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워안대로 접수함

#### 아, 공적채널 평가방안에 관한 사항

o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실천을 위한 공적채널 콘텐츠의 공익성·공적역할 평가방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 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현행 방송평가 감점항목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평가'는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만 감점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해서는 감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접수함